

전기공급규정 개정내용(상)

1991년 10월 1일 시행

현행	개정 [안]	개정 사유
<p>제4조 [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]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수용가와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</p>	<p>제4조 [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]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수용가와 당사가 협의 결정하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사가 별도로 정합니다.</p>	<p>○ 문맥 및 내용보완 -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규정취지에 따라 협의 결정 - 규정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 당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[지침 시행근거 마련]</p>
<p>제6조 [용어의 정의] 1. 표준전압 [標準電壓] [본분생략] 가. 저압 [低壓] 100V · 200V · 220V · 380V를 말합니다. 나. [생략] 다. 특별고압 [特別高壓] 11,400V · 22,000V · 22,900V · 66,000V · 154,000V를 말합니다. 2. [생략] 3. 송전선로 [送電線路] 발전소 상호간,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 [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]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의 전기공작물로서 당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. 4. 배전선로 [配電線路] 발전소,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로부터 다 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, 변압기 및 기타의 전기공작물로서 당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. 5. 일반용전기공작물 [一般用電工作物]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 소규모의 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을 말합니다.</p>	<p>제6조 [용어의 정의] 1. 표준전압 [標準電壓] [본문 현행과 같음] 가. 저압 [低壓] 110V · 200V · 220V · 380V를 말합니다. 나. [현행과 같음] 다. 특별고압 [特別高壓] 11,400V · 22,000V · 22,900V · 66,000V · 154,000V · 345,000V를 말합니다. 2. [현행과 같음] 3. 송전선로 [送電線路] 발전소 _____ _____ 전기설비로서 _____를 말합니다. 4. 배전선로 [配電線路] 발전소 _____ _____ 전기설비 _____를 말합니다. 5. 일반용전기설비 [一般用電氣設備] 동력자원부령으로 _____ 전기설비를 말합니다.</p>	<p>○ 개정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 ○ 대용량수용 증가추세로 154KV급 송배전공급시설로는 공급능력의 한계가 있어 345KV급 공급필요성 대두 ○ 개정 전기사업법과 용어 일치 [전기공작물→전기설비]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6. 자가용전기공작물〔<u>白家用電氣工作物</u>〕 전기사업용전기공작물 및 일반용전기공작물 이외의 전기공작물을 말합니다. 7~20. [생략]</p> <p>제11조 [수급계약서·공급예정서의 작성] [본문 생략] 1. 수급계약서 [생략] 2. 공급예정서 가. 자가용전기공작물 수용으로서 제1호 이외의 수용가 나~다. [생략]</p> <p>제15조 [수급계약 폐지후의 채권·채무] ① 요금 및 기타의 채권채부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. ② 제 1항에 따라 채권채부가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수용가의 요금 및 기타의 채권채부 [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및 제52조에 의한 배상금은 제외합니다.]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됩니다. <u>다만,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제17조 [수용장소의 구분] ① 수용장소라고 함은 토지·건물 등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, 원칙적으로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,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수용장소로 하되, 그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제 2항에 의합니다. [단 서 신 설]</p>	<p>6. 자가용전기설비〔<u>白家用電氣設備</u>〕 전기사업용전기설비...전기설비...전기설비를 말합니다. 7~20. [현행과 같음]</p> <p>제11조 [수급계약서·공급예정서의 작성] [본문 현행과 같음] 1. 수급계약서 [현행과 같음] 2. 공급예정서 가. 자가용전기설비 수용으로서 제 1호 이외의 수용가 나~다. [현행과 같음]</p> <p>제15조 [수급계약 폐지후의 채권·채무] ① [현행과 같음] ② 제 1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승계됩니다. [단 서 삭 제]</p> <p>제17조 [수용장소의 구분] ① [현행과 같음]</p> <p>다만, 제26조 [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]에 의</p>	<p>○ 임의경매의 근거법인 강제경매가 민사소송법에 통폐합[909.1시행] 됨에 따라 강제경매도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 불인정</p> <p>○ 유사 공과금과 통일 수도, 가스, 폐기물수수료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② 수용장소의 구분은 다음에 따릅니다.</p> <p>1. 단독주택 [생략]</p> <p>2. 공동주택 [생략]</p> <p>3. 상점 및 시장 [생략]</p> <p>4. 공장 [작업장 포함], 사무실, 관공서, 학교, 병원 및 기타</p> <p>가.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물, 1건물만으로 된것은 1수용장소로 합니다.</p> <p>다만, 1구내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건물이 있고 공동설비가 없는 경우 또는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고 각부분이 고정된 벽, 바닥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공동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각부분을 1수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경우에 양배수설비와 복도, 계단, 현관 등에 설치한 조명용 전등 [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]은 공동설비로 보지 아니합니다.</p> <p>나. [생략]</p> <p>5~8. [생략]</p> <p>③ [생략]</p> <p>제19조 [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</p> <p>① [생략]</p> <p>② 사용설비의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입력을 적용하고,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입력으로 환산합니다.</p> <p>이 경우,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(Hp) 두 가지로 표시된 때에는 KW를 기준으로, 마력(Hp)으로만 표시된 때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, 특수기기에 대</p>	<p>하여 수용장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</p> <p>② 수용장소의 구분은 다음에 따릅니다.</p> <p>1. 단독주택 [현행과 같음]</p> <p>2. 공동주택 [현행과 같음]</p> <p>3. 상점 및 시장 [현행과 같음]</p> <p>4. 공장 [작업장 포함]·사무실·관공서·학교·병원 및 기타</p> <p>가. 1구내를 _____ 합니다.</p> <p>다만, _____ 공동설비 [양배수설비와 복도, 계단, 현관 등에 설치한 조명용 전등 및 소형기기는 공동설비로 보지 아니 합니다]가 없는 경우 또는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고 각부분이 고정된 벽·바닥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공동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각부분을 1수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경우 제24조 [전기공급방식, 공급전압 및 주파수]에 의하여 저압으로 공급하는 수용장소에서 공동설비의 전부를 독립된 1수용장소로 할 경우에는 각부분을 1수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[현행과 같음]</p> <p>5~8. [현행과 같음]</p> <p>③ [현행과 같음]</p> <p>제19조 [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</p> <p>① [생략]</p> <p>② 사용설비의 _____</p> <p>_____ 환산합니다.</p> <p>이 경우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	<p>○ 전기사업법에서의 공동수전설비제도를 규정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으로 용어 일원화</p> <p>○ 수용장소 획정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운영</p> <p>○ 문맥정비</p> <p>○ 저압공급 대상 수용장소는 수용장소 획정요건 완화</p>

현행	개정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하여는 당해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특수기</td> <td>[전기용접기및전기]</td> <td>KW 또는 KVA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전동기</td> <td rowspan="2">저압</td> <td>단상</td> <td>KW</td> <td>133%</td> </tr> <tr> <td>삼상</td> <td>KW</td> <td>125%</td> </tr> <tr> <td>고압</td> <td>KW</td> <td>118%</td> 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사용설비별</th> <th>출력표시</th> <th>입력(KW) 환산율</th> </tr> <tr> <td>전등 및 소형기기</td> <td>W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전열기</td> <td>KW</td> <td>100%</td> </tr> </table> <p>③ [생략]</p> <p>④ 기기 [機器]의 수 [數]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합니다. 이 경우에 분기 [分岐]소켓 등 고정적이 아닌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아니합니다.</p> <p>1. 기기의 수 [數]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: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의 수에 해당하는 기기의 용량을 합제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.</p> <p>2. 기기의 수 [數]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적은 경우: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이를 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.</p> <p>가~나. [생략]</p> <p>제20조 [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</p> <p>①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당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의 총용량 (1KVA를 KW로 봅니다)과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인 사용설비의 총입력과의 합계로 합니다.</p> <p>다만, 변압기설비의 총용량과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인 사용설비의 총입력과의 합계가 400KW미만이고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계용량에 대하여 다음 표의 계약전력환산율을 곱한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.</p>	특수기	[전기용접기및전기]	KW 또는 KVA	100%	전동기	저압	단상	KW	133%	삼상	KW	125%	고압	KW	118%	사용설비별	출력표시	입력(KW) 환산율	전등 및 소형기기	W	100%	전열기	KW	100%	<p>...적용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특수기</td> <td>[전기용접기및전기]</td> <td>KW 또는 KVA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전동기</td> <td rowspan="2">저압</td> <td>단상</td> <td>KW</td> <td>133%</td> </tr> <tr> <td>삼상</td> <td>KW</td> <td>125%</td> </tr> <tr> <td>고압,특별고압</td> <td>KW</td> <td>118%</td> 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사용설비별</th> <th>출력표시</th> <th>입력(KW) 환산율</th> </tr> <tr> <td>전등 및 소형기기</td> <td>W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전열기</td> <td>KW</td> <td>100%</td> </tr> </table> <p>③ [현행과 같음]</p> <p>④ 소형기기 [小型機器]의 수 [數]가 _____ 계산합니다. 이 경우에 _____ ...아니합니다.</p> <p>1. 소형기기의 수 [數]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: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의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제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.</p> <p>2. 소형기기의 수 [數]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적은 경우: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.</p> <p>가~나. [현행과 같음]</p> <p>제20조 [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</p> <p>①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당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1차 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(1KVA를 1KW로 봅니다)로 합니다.</p> <p>[단서 삭제]</p>	특수기	[전기용접기및전기]	KW 또는 KVA	100%	전동기	저압	단상	KW	133%	삼상	KW	125%	고압,특별고압	KW	118%	사용설비별	출력표시	입력(KW) 환산율	전등 및 소형기기	W	100%	전열기	KW	100%	<p>○ 특고압 포함</p> <p>○ 기기는 소형을 의미함으로 명확히 명시</p> <p>○ 계약전력 결정방법 간편, 단순운영 - 변압기설비: 변압기 표시용량 - 사용설비: 입력 및 계약전력 환산율 적용</p>
특수기	[전기용접기및전기]	KW 또는 KVA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동기	저압	단상	KW	13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삼상	KW	1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고압	KW	11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설비별	출력표시	입력(KW) 환산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등 및 소형기기	W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열기	KW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수기	[전기용접기및전기]	KW 또는 KVA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동기	저압	단상	KW	13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삼상	KW	1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고압,특별고압	KW	11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설비별	출력표시	입력(KW) 환산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등 및 소형기기	W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열기	KW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	개정사유
구분	계약전력 환산율	비고	
처음 50 KW에 대하여	90%	계산의합계 치 단수가1 KW미만일 경우에는소 수점이하첫 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 다.	
다음 50 KW에 대하여	85%		
다음 50 KW에 대하여	80%		
다음 50 KW에 대하여	75%		
다음 100 KW에 대하여	70%		
300KW초과분에 대하여	65%		
② [생략]		② [현행과 같음]	
③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설비의 수용가측 변압기 [이하 "2차변압기"라 합니다]의 총용량과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인 사용설비의 총입력과 의 합계를 기준으로 제1항에 의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		③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변압기설비의 수용가측 변압기 [이하 "2차변압기"라 합니다]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용설비는 제19조 [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[KW]을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.	
[신 설]		④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 기기는 변압기용량으로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는 제19조 [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[KW]을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.	
[신 설]		⑤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용설비는 제19조 [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]에 의하여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[KW]을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.	

<다음호에 계속.....>